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대상 추가 및 감면기준 확대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대상 추가 및 감면기준 확대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7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1
[참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2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대상 추가 및 감면기준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인 분담금 징수대상으로

①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복수채널사용사업자), ②「신문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 ③「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OTT사업자)를 추가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광고매출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을 분담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제2항제3호, 제4항·제5항 신설).

○ 또한 개정안은 분담금 감면대상에 콘텐츠 제작비용 사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분담금 감면기준에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추가로 고려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략)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 6.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제6항까지----- ----- 4.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 ----- -----100분의 3----- ----- ----- ----- ----- -----. 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 2.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 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 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

현행	개정안
<u><신설></u> ④ (생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u>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u>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 ----- -----못한 자 또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 -----.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 -----제6항까지----- ----- ----- ----- ----- ----- -----. ⑩ ----- -----제9항----- ----- ----- ----- ----- -----.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항----- ----- ----- ----- ----- ----- -----.

현행	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방송통신 진흥 지원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¹⁾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²⁾ 등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①지상파방송사업자,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③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에게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⑤위성방송사업자, 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로부터는 전년도 방송서

1)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홈쇼핑PP에 대하여는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였으나,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징수하도록 개정되었음.

2) 2026년 기준 방미통위에 승인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8개(종편·보도PP 6개, 홈쇼핑PP 12개)이며,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총 236개임.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스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며,

⑦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로부터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징수율(15%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참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 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을 초과하는 자,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OTT사업자)로부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수채널사용사업자(Multiple Program Provider, MPP)란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채널에 편성하거나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는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사업자⁴⁾⁵⁾로,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자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사배열 등을 통해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행 및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25조 제2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u><징수대상 추가></u>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u>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u><징수율 조정></u> - 방송광고 매출액의 <u>100분의 6</u> 이내	- 방송광고 매출액의 <u>100분의 3</u> 이내
제25조 제3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1.5%)	(좌동) (좌동)
신설	<u><징수대상 추가></u>	•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u> - 전년도 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신설	<u><징수대상 추가></u>	• <u>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u> -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제25조 제4항	•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10~13%)	(좌동) (좌동)

5) 네이버, 네이트, AXZ(다음) 등

○ MPP·뉴스포털·OTT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기금의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OTT사업자 등 방송통신 분야의 새로운 사업자군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고갈 위기인 방발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5년간(2021~2025년) 방발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지출	12,518	12,310	11,192	9,000	7,368
자체수입	10,508	7,168	6,910	6,165	5,973
부담금 수입	9,986	6,480	6,443	5,784	5,650

○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폭넓게 허용하고자 하는데, 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확대를 촉진하여 콘텐츠 다양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②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를 유도하며, ③방송사업자의 부담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전반적으로 개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기금 부담금 징수 대상을 추가하며 징수율을 낮추고 감면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라고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분담금 징수대상에 뉴스포털·OTT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舊 방송법」⁶⁾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계승한 것으로, 2010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방송통신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설치되었음.
 -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매출액), 홈쇼핑PP(결산상 영업이익) 등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되면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의 재원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음.
- 이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유한한 공공재인 ‘전파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지상파방송사업자)하거나 진입장벽이 제한된 허가·승인을 받아(종편·보도·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누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생태계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익자부담금’이자 ‘특별부담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6) 2010.3.22. 법률 제10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조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한다고 판시⁷⁾한 바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긴밀한 관련성’과 관련하여, ①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②부담금 재원을 통한 공적 과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③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④부담금이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등록사업자인 뉴스포털⁸⁾·복수채널사용사업자⁹⁾와 신고

7) 헌재 2003.1.30. 2002헌바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 위헌소원]
헌재 2004.7.15. 2002헌바42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위헌소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9)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사업자인 OTT사업자¹⁰⁾는 허가·승인사업자와 달리 배타적 사업권이나 주파수 이용 권한 등을 부여받지 아니한바, 이들에게 기금을 분담할 집단적 책임이 있다거나 일반 국민에 비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특정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뉴스포털이나 OTT사업자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 또는 사업권 부여로 인한 독점적 이익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법인 분리 등 우회 경로 마련이 용이하여 분담금 부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금의 주된 용도로서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지원, 공익 방송 지원사업 등의 직·간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뉴스포털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외적 부담으로서 방받기금을 분담시키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음.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둘째**, 분담금 징수대상으로 OTT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글로벌 OTT사업자 대상의 분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¹¹⁾하는 OTT 산업 특성상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을 선별할 경우 글로벌 사업자에만 분담금이 집중되어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 또한, 글로벌 OTT사업자의 ‘OTT’ 사업을 통한 ‘국내’ 매출액이 그 외 사업 또는 타국에서의 매출액과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될 가능성¹²⁾이 높다는 점에서 분담금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국내 OTT사업자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분담금 징수 기준 규모를 설정할 경우 수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OTT 산업¹³⁾의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광고 매출액 등 매출액이 분담금 산정 기준금액으로서 적절하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1) 「2025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5.12.)에 따르면 OTT 이용자 중 유튜브 이용자 비율이 85.4%로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 47.6%, 쿠팡플레이가 18.9%로 그 뒤를 이음.

12) 뉴스1, “연매출 8조 네이버 법인세 4876억…11조 구글코리아는 172억”, 2025.10.1.

13)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티빙** 영업손실은 (‘23년) 1,420억원 → (‘24년) 710억원 → (‘25년) 698억원, **웨이브** 영업손실은 (‘23년) 804억원 → (‘24년) 277억원 → (‘25년) 121억원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새로이 분담금을 징수하려는 사업자들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광고 매출액’을, 뉴스포털사업자에 대하여는 ‘광고매출액’을, OTT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징수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PP에 대하여는 ‘결산상 영업이익’을, 종편PP, 보도PP에 대하여는 ‘방송광고 매출액’을,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징수하고 있음.
- 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해당하므로 이미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등)와 같이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임.
- ② 뉴스포털사업자의 경우 광고매출이 뉴스 제공·매개 서비스 외에도 검색 엔진,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입된 트래픽을 통해 창출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액 전부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징수하는 것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발기금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 ③ OTT사업자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가 영업 적자상태가 수년간 유지¹⁴⁾되고 있음에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OTT사업자는 국내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될 경우 분담금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뉴스포털,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시 각 사업자별 특성과 시장·산업 동향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중 분담금 징수대상을 선별하는 매출액 기준(3천억원)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1개뿐이므로,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 기준을 완화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매출액 기준 주요 MPP 현황 >

(단위: 개, 억원)

사업자명	채널수	주요 채널명	방송매출액	광고매출액
씨제이이엔엠	15	tvN, Mnet, 투니버스 (홈쇼핑 제외)	7,645	2,248
스튜디오프리즘	3	SBS Food, SBS Plus, SBS fun E	1,569	329
에스비에스미디어넷	7	SBS Sports, SBS Biz, SBS GOLF	1,494	350
엠비씨플러스	5	MBC ON, MBC Dramanet	1,348	614
케이티이엔에이	13	ENA, 키즈톡톡플러스, ONT	1,112	621
스포티비	8	SPOTV, SPOTV Prime, SPOTV K	1,062	227

※자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미통위, 2026.6.)

14)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티빙** 영업손실은 ('23년) 1,420억원 → ('24년) 710억원 → ('25년) 698억원, **웨이브** 영업손실은 ('23년) 804억원 → ('24년) 277억원 → ('25년) 121억원으로 나타남.

- 다섯째, 주요 OTT사업자의 경우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분담금 징수로 인해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TT서비스는 광고를 시청하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형 OTT’¹⁵⁾와 일정 기간을 단위로 구독료를 지불하여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형 OTT’¹⁶⁾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료 구독형 OTT의 경우 기금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가 구독료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여섯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¹⁷⁾에 따르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재무상태표, 손

15) 유튜브, 네이버 치지직, 쿠팡플레이 등

16)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장관과 방미통위가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송부함.

- 이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30일과 11월 30일, 2회 분납이 가능함.¹⁸⁾

○ 자료 제출 및 분담금 산정·부과 과정 중 현행법이 개정되어 분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을 1월 1일로 변경하거나,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는 등 개정안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인 납부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 당시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기금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¹⁹⁾

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0165호, 2010.3.22.)

○ 한편, 신법과 구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분담금 면제·경감 규정이 종전 부과·징수된 분담금에 적용되는지 여부 또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2년 7월 분담금 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경감 기준을 변경하였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을 해당 연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바 있음.²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12호, 2012.7.31.)

부칙 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계류 중인 유사 법률안 현황 >

구 분	조인철의원안 (제2201663호)	최민희의원안 (제2203660호)	이훈기의원안 (제2213646호)
부과대상 추가	부가통신사업자	MPP	
부과 기준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분담금 산정 기준금액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비고	기금 용도로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지원사업 추가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대하여 방송협찬 매출액 6% 이내 분담금 추가 징수	-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미디어 전반의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분담금 징수 가능성과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지상파와 종편·보도PP에 대한 법정 징수율 상한을 하향 조정(6%→3%)하는 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한 방송사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공감하나, 이는 분담금 징수체계의 전면 재조정을 요하고, 기금 재정의 급격한 완화가 우려되므로 일부 소폭 하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함.
- 마지막으로, 분담금 면제·경감과 징수율 차등 기준 확대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의 정당성, 부과대상·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국내 OTT사업자들은 해외사업자와 달리 영업 적자 상태로 분담금 부과 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포털사업자는 뉴스를 유통·중개하는 사업자로서 방발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부과기준으로서 매출액에는 뉴스광고 이외 매출도 포함되므로 적절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국가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허가·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제한경쟁 하에서 얻은 수익 일부를 공익 차원에서 징수하는 방발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주파수와 같은 한정된 국가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영향,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채널에이: 동의) 방송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방발기금 징수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미디어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MPP·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방송사와 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 (MBN: 동의) 글로벌 OTT 및 대형 포털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익을 거두는 플랫폼사업자를 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

여 레거시 미디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생태계 상생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방송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콘텐츠웨이브: 신중검토) 방발기금은 특별부담금으로서 주파수 등 제한된 공적 자원을 허가·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적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성격인데, ①공적 자원 사용 없이 시장 자유 경쟁 영역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 정당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②특정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기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③통상 문제로 인해 글로벌기업에 대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유발될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 (한국방송협회: 동의) 변화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추어 기금 부담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콘텐츠 제작 핵심 주체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담금 비율 조정 및 경감·차등 책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함.

- 특히, 대형 MPP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를 상회하는 광고매출과 시장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간 공적책무 부

담의 형평성 제고, 방발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확보 측면에서 분담금 부과가 필요함.

- 또한, 포털사업자는 뉴스의 배열, 편집, 유통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언론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콘텐츠를 활용해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포털사업자도 기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방발기금이 정부로부터 정책적 특혜를 부여받은 라이선스(허가, 승인) 사업의 이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영되는 준조세이므로, 등록이나 신고 대상인 PP, 그 중에서도 특정 기업만을 타겟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부담금 제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다분함.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MPP를 분담금 납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인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징수율 차등 책정 기준으로서 ‘공익 기여도’ 반영이 필요하나, 지역성 투자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

○ (한국IPTV방송협회: 수정 동의) 분담금 부담 형평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개정 방향이 타당하며, 지상파와 종편·보도PP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 대상 징수율 상한의 조정도 병행되어야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①독점적 사업권 부여가 없고 회소 공공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방발기금의 연혁 및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에도 위배되고, ②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특별부담금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③적자 구조에 있는 국내 OTT사에 부담이 가중되어 K-콘텐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수정 동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부담금 징수 기준 완화 조건에 명시된 방송콘텐츠 비용에 외주제작사에 대한 집행액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구 분		분담금 징수대상 확대	분담금 경감사유, 차등 기준 확대	
정 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수정 동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
이 해 관 계 자	사업자	채널에이	동의	동의
		MBN	동의	-
		콘텐츠웨이브	신중검토	-
	협회	한국방송협회	찬성	찬성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수정 동의
		한국IPTV방송협회	동의	수정 동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	수정 동의

문 의 처

02)6788-522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를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를 말한다.

제3조(분담금 납부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

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 5)를 추가 감경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제7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기본징수율의 산정 (제4조제1항 관련)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원}) \div 1\text{조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원}) \div 9,0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원}) \div 5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원}) \div 4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원})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비고

-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
-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 감경하여 조정한 0.931로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 전년도 납부 분담금) × (방송서비스 매출액/전체 영업수익)
---------------------	---	---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홈쇼핑방송매 출수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	---

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 삭제 >

제6조(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5/100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IPTV사업자	
홈쇼핑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13/100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 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고 :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매출액 100억 이하 구간에 1.0/100, 매출액 100억 초과구간에 1.5/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였으나,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개정되었음.